#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16

발의연월일: 2025. 5. 1.

발 의 자: 민형배·강유정·손명수

조승래 · 조계원 · 이성윤

염태영 · 이해민 · 황정아

한준호 · 모경종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지방'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은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또는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평적·가치중립적 개념입니다.

현행법은 법 전반에 걸쳐 '지방'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 법률 제 호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의료원"을 "지역의료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의료원은"을 "지역의료원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의료원을"을 각각 "지역의료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료원은"을 "지역의료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의료원을"을 "지역의료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방의료원을"을 "지역의료원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의료원을"을 "지역의료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의료원을"을 "지역의료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의료원을"을 "지역의료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의료원의"를 각각 "지역의료원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지방의료원을"을 "지역

의료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료원이"를 "지역의료원이"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의료원은"을 "지역의료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료원은"을 "지역의료원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의료원에"를 "지역의료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의료원의"를 각각 "지역의료원의"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의료원의"를 각각 "지역의료원의"의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의료원에"를 "지역의료원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의료원을"을 "지역의료원을"로,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지방의료원"을 "지역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한다.

제14조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의료원이"를 "지역의료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지방의료원에"를 "지역의료원에"로 한다.

제18조 중 "지방의료원은"을 "지역의료원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의료원은"을 "지역의료원은"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방의료원이"를 "지역의료원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의료원의"를 각각 "지역의료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의료원이"를 "지역의료원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의료원"을 "지역의료원의"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의료원에"를 "지역의료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지방의료원이"를 "지역의료원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의료원에"를 "지역의료

원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호 중 "지방의료 원의"를 각각 "지역의료원의"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의료원이"를 "지역의료원이"로, "지방의료원에"를 "지역의료원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의료원이"를 "지역의료원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료원의"를 각각 "지역의료원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지방의료원에"를 "지역의료원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지방의료원"을 "지역의료원"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전단 중 "지방의료원으로"를 "지역의료원으로"로 한다.

제25조 중 "지방의료원에"를 각각 "지역의료원에"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전단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한다.

제27조 중 "지방의료원에"를 "지역의료원에"로 한다.

제28조 중 "지방의료원의"를 "지역의료원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 료원
- ②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료 위
-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 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료원"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 중 "지방의료원"을 "지역의료원"으로 한다.

④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지방의료원"을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료원"으로 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 료원
-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바.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 료원
-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중 "지방의료원"을 "지역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을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역의료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지역의료원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 의 설립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u>지방의료</u> 제2조(정의) ----지역의 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 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 한다.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 제3조(법인) 지역의료원은-----로 한다.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 -----지역의료원을-----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 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 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 ② 지역의료원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

- 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생략)
- 2. <u>지방의료원을</u>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 3. <u>지방의료원을</u> 신축·이전하 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 4. 그 밖에 <u>지방의료원의</u>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가 <u>지방의료원</u> 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

③
<u>지역의료원을</u>
<b>4</b>
·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지역의료원을</u>
1. (현행과 같음) 2. <u>지역의료원을</u>
1. (현행과 같음) 2. <u>지역의료원을</u>
1. (현행과 같음) 2. <u>지역의료원을</u> 3. <u>지역의료원을</u>
1. (현행과 같음) 2. <u>지역의료원을</u> 3. <u>지역의료원을</u>
1. (현행과 같음) 2. <u>지역의료원을</u> 3. <u>지역의료원을</u>
1. (현행과 같음) 2. 지역의료원을 3. 지역의료원을 4지역의료원의
1. (현행과 같음) 2. 지역의료원을 3. 지역의료원을 4지역의료원의 5지역의료원

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⑥ ----지역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 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 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 -----<u>지역의</u>료원의-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① | 제5조(지역의료원의 명칭 등) ①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 지역의료원의----지 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 역의료원을-----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 -----지역의료원이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 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지 못한다. 제6조(정관) ① 지방의료원의 정 제6조(정관) ① 지역의료원의----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 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 ② 지역의료원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 ① 지방의료원은 다 제7조(사업) ① 지역의료원은----

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 8. (생략)
-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 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임원) ① <u>지방의료원에</u>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 3. (생략)
- 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원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③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 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

1. ~ 8. (현행과 같음) ② <u>지역의료원은</u>
제8조(임원) ① <u>지역의료원에</u>
1. ~ 3. (현행과 같음) ② <u>지역의료원의</u>
<u>지역의료</u> <u>원의</u>
,
3 <u>지역의료원의</u>
지역의료
<u>원의</u>

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⑤ (생 략)
- ⑥ 감사는 <u>지방의료원의</u> 업무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⑦ (생략)
- 제9조(이사회) ① <u>지방의료원에</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 ~ 6. (생략)
  - ② ~ ⑥ (생 략)
-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u>지방의료</u> 원을 대표하고 <u>지방의료원의</u>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생략)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지방의료원의</u> 임원이 될 수 없다.
  - 1. ~ 5. (생략)
  - ② <u>지방의료원의</u>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 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u>지역의료원의</u>
	,
vi	⑦ (현행과 같음)
제	9조(이사회) ① <u>지역의료원에</u>
	 1. ~ 6. (현행과 같음)
	2 ~ ⑥ (현행과 같음)
제	10조(원장) ①지역의료
	<u>원을지역의료원의</u>
	② (현행과 같음)
제	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u>지역의료원의</u>
	1. ~ 5. (현행과 같음)
	② <u>지역의료원의</u>
	·

1	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직원의 임면) <u>지방의료원</u>	제12조(직원의 임면) <u>지역의료원</u>
<u>의</u>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	<u> 의</u>
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	
다.	<b></b>
제13조(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13조(겸직)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	
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	
에 대학 • 연구기관 • 의료기관	
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	
연구기관・의료기관의 장의 허	
가를 받아 <u>지방의료원의</u> 연구	<u>지역의료원의</u>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u>지방의료원의</u>	②지역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 여야 하다. 제14조(사업연도) 지방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 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 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 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 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 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 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 (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

제	 14조(사업연도) <u>지역의료원의</u>
제	
	<u>지역의료원의</u>
제	②·③ (현행과 같음) 17조(보조금 등) ①
	<u>지역의</u> 료원의

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
- ④ (생략)
- 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u>지</u> 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u>지방의료원에</u>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제18조(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제19조(자금의 차입) ① <u>지방의료</u> 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 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 다.
  - ② (생략)

제20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

③
지역의료원이
④ (현행과 같음)
⑤ <u> </u>
<u>역의료원의</u>
<u>지역의료원에</u>
-,
제18조(재원) <u>지역의료원은</u>
제19조(자금의 차입) ① <u>지역의료</u>
<u>원은</u>
_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지역의료원의 폐업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지방</u> 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 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협의의 시기·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②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라
- ②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라 남은 재산은 해당 지방의료원 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고로 귀속하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지방</u>의료원이 제1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
- 지방의료원의 입원 환자가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및 지원

$\circ$	(생	략)
Δ.	('8'	97

① <u>지역</u>
의료원이
,
② 지역의료원의지역의료원 의
 ③ <u>지역</u>
의료원이
1. <u>지역의료원의</u>
2. (현행과 같음)

3	. ユ	밖에	<u>지빙</u>	의료	<u>원</u>	이용	환
	자의	권인	] 보	호를	위	하여	필
	요한	조치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보 전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지방의료원</u> 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 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에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 지방 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 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 중,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 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u>지방의료</u> 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3 <u>지역의료원</u>
ll 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u>지역의료원에</u>
- <u>지역의료원의</u> <u>지</u>
역의료원이
 ③ (현행과 같음)
④ (한영의 필요) ④지역의료
원의

운영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 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 고를 할 수 있다.

## ⑤ ~ ⑦ (생 략)

제21조의2(운영지침)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u>지방의료원에</u>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 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 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 3. (생략)
- 4. 그 밖에 <u>지방의료원의</u> 공공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효율 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생략)
- 제22조(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거 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운영지침) ①
<u>지역의료원에</u>
- <u>지역의료원의</u>
 1. ~ 3. (현행과 같음)
4 <u>지역의료원의</u>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①
지역의료

-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지방의료</u>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4. <u>지방의료원이</u>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 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 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원장에게 해당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생 략)
-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 저 지단체의 장은 <u>지방의료원의</u>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

원이
<u>지역의</u> = 이제
<u>료원에</u>
· 1. ~ 3. (현행과 같음)
4. <u>지역의료원이</u>
5
<u>지역의료원의</u>
②
- <u>지역의료원의</u>
 ③ (현행과 같음)
③ (현영과 실름)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지역의료원의

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u>지방의료원의</u>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u>지방의료원의</u> 업 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생 략)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① 원장은 <u>지방의료원의</u>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 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1. ~ 9. (생략)

-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u>지방</u> 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 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 11. (생략)
- 12. 그 밖에 <u>지방의료원의</u> 운영 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

<u>지역의료원의</u>					
 1. ~ 9. (현행과 같음) 10 <u>지역</u> 의료원에					

2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	항
을	지방의	료 <u>원</u> 홈	후페 ㅇ	기기	및	보
건-	복지부징	관이	정하	는 미	ዘ체	에
공	시하여이	: 하고	, 공	시한	사	항
의	확인에	필요한	<u></u> 서	류를	주	된
사-	무소에 결	갖추어	두어	] o]: र्	한디	<b>-</b> .

## ③ (생략)

제24조의2(통합공시)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u>지방의료원의</u>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 시"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이 제24조에 따른 공시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의 공시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한때에는 해당 지방의료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

②
<u>지역의료원</u>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통합공시) ①
<u>지역의료원의</u>
② (현행과 같음)
③
<u>지역의료원으로</u>

사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생략)

-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u>지방의료원에</u>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u>지방의료원에</u> 파견할 수 있다.
-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위 탁) ① (생 략)
  -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지방의료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수 있다.
  - ③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공무원의 파견)						
<u>지역의료원에</u>						
<u>지역의료원에</u>						
<u>.</u>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위						
탁)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역의료원의</u> -						
③ 지역의료원의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지방</u>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지역</u>
<u>의료원에</u> 대해서는 이 법에서	의료원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u>.</u>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u>지방의료원의</u> 임직원은	의제) <u>지역의료원의</u>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